

# 부동산등기법 1차 문제집(3판) 정오표

## (2025년 6월 29일 수정)

개정 작업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기출지문을 개정된 법령과 예규에 따라 수정 및 해설하였으며, 신규 문항의 오류 또한 바로잡았습니다.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.

부동산등기법 문제집(3판)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.

페이지	문제	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156	02	복수정답 해설수정	<p>다음의 등기신청 중 한 개의 신청서(촉탁서)로 신청(촉탁)할 수 있는 경우는? <b>▶ 2023년 법무사</b></p> <p>해설 ④</p> <p>④ 변경사항 없음</p> <p>① 1.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(법 제25조 본문).</p> <p>2. 다만, <b>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</b>하거나 <b>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</b>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(법 제25조 단서).</p> <p>3. 따라서 <b>甲이 하나의 계약에 의해 관할이 다른 X부동산과 Y부동산을</b> 乙에게 매도하여 X·Y부동산에 대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처럼 <b>관할이 다른 경우</b>에는 <b>일괄신청할 수 없다.</b></p>	<p>다음의 등기신청 중 한 개의 신청서(촉탁서)로 신청(촉탁)할 수 있는 경우는? <b>▶ 2023년 법무사</b></p> <p>해설 ①④</p> <p>④ 변경사항 없음</p> <p>① 1.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(법 제25조 본문).</p> <p>2. 최근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, <b>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</b>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법 제7조의 2가 신설 됨에 따라,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도 <b>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(법 제25조 단서).</b></p> <p>3. 따라서 <b>甲이 하나의 계약에 의해 관할이 다른 X부동산과 Y부동산을</b> 乙에게 매도하여 X·Y부동산에 대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<b>법 제7조의 2에</b>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<b>일괄신청할 수 있다.</b></p>

193	01	해설수정	<p>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▶ 2022년 법무사</p> <p>해설 ⑤</p> <p>⑤ 1. 등기관은 법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<u>이유를 적은 결정</u>으로 신청을 <u>각하</u>하여야 한다(법 제29조).</p> <p>2. <u>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은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</u>(예규 제1836호).</p>	<p>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▶ 2022년 법무사</p> <p>해설 ⑤</p> <p>⑤ 1. 등기관은 법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<u>이유를 적은 결정</u>으로 신청을 <u>각하</u>하여야 한다(법 제29조).</p> <p>2. <u>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은 서면신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</u>. 즉, 등기관은 <u>등기전산정보시스템</u>을 이용하여 <u>각하결정원본</u>(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)을 <u>작성·저장</u>한다(예규 제1836호).</p> <p>3. <u>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</u>는 <u>등기전산정보시스템</u>을 이용하여 <u>각하결정등본</u>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<u>전송하는 방법</u>으로 한다(예규 제1809호).</p>
236	02	옳은지문 수정	<p>법인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▶ 2021년 법무사</p> <p>② 해당 법인의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해설 ①</p>	<p>법인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▶ 2021년 법무사 일부변경</p> <p>②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해설 ①</p>
401	04	정답없음	<p>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▶ 2015년 법무사 일부변경</p> <p>해설 ④</p>	<p>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▶ 2015년 법무사 일부변경</p> <p>해설 정답없음</p>

<p>461</p>	<p>01</p>	<p>정답수정 해설수정</p>	
		<p>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▶ 2024년 등기서기보</p> <p>해설 ③</p> <p>② 1.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<b>접수장의 비고란 및 등기신청서 표지에 각하라고 주서하고, 그 등기신청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</b>(예규 제1703호, 2). 2. <b>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</b>의 보존기간은 <b>5년</b>이다(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).</p> <p>③ 1. 등기관은 <b>등기전산시스템</b>을 이용하여 <b>각하결정 원본</b>(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)을 <b>작성·저장</b>한다. 이 경우 <b>각하결정 등본</b>(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)을 <b>신청인 또는 대리인</b>에게 <b>교부</b>하거나 <b>특별우편송달</b> 방법으로 송달하되, 교부를 하는 때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<b>영수증을 수령</b>하여야 한다(예규 제1703호, 3). 2. 전자신청에 대한 <b>각하결정의 방식 및 고지방법</b>은 <b>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</b>으로 처리한다(예규 제1836호). 따라서 <b>신청인 또는 대리인</b>에게 <b>교부</b>하거나 <b>특별우편송달</b> 방법으로 송달한다.</p>	<p>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▶ 2024년 등기서기보 일부변경</p> <p>해설 ②</p> <p>② 1.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<b>등기전산정보시스템</b>에 의하여 <b>접수장의 비고란에 자동으로 각하라고 생성</b>하는 방식으로 기록하고, 등기신청서 <b>갑지</b>에는 등기관이 <b>각하라고 기재</b>한다(예규 제1809호). 2. <b>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</b>의 보존기간은 <b>5년</b>이다(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).</p> <p>③ 1. 등기관은 법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<b>이유를 적은 결정</b>으로 신청을 <b>각하</b>하여야 한다(법 제29조). 2. 전자신청에 대한 <b>각하결정의 방식</b>은 <b>서면신청과 동일하게</b> 처리한다. 즉, 등기관은 <b>등기전산정보시스템</b>을 이용하여 <b>각하결정원본</b>(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)을 <b>작성·저장</b>한다(예규 제1836호). 3. 전자신청에 대한 <b>각하결정의 고지</b>는 <b>등기전산정보시스템</b>을 이용하여 <b>각하결정등본</b>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<b>전송하는 방법</b>으로 한다(예규 제1809호).</p>

469	11	해설수정	<p>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▶ 2017년 법무사</p> <p>해설 ④</p> <p>③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<u>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(취득세·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)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. 다만, 첨부서류 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(예규 제1809호, 3-다).</u></p>	<p>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▶ 2017년 법무사 일부변경</p> <p>해설 ④</p> <p>③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<u>등기신청서이외의 첨부서류(취득세·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)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. 다만,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그 등기신청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(예규 제1809호).</u></p>
511	13	옳은지문 수정	<p>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(부동산등기법 제100조).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▶ 2016년 법원사무관</p> <p>①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<u>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</u>으로 하는데,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.</p> <p>②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<u>이의신청서</u>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.</p> <p>해설 ④</p>	<p>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(부동산등기법 제100조).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▶ 2016년 법원사무관 일부변경</p> <p>①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관할 등기소에 <u>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</u>으로 하는데,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.</p> <p>②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<u>이의신청정보, 전자적으로 작성한 등기관의 의견서,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</u>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.</p> <p>해설 ④</p>

512	15	옳은지문 수정	<p>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     ▶ 2015년 법무사</p> <p>②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해설 ①</p>	<p>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     ▶ 2015년 법무사 일부변경</p> <p>②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관할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.</p> <p>해설 ①</p>
-----	----	------------	---	---